

 보 도 자 료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이 나라</i>			
보도 일시	2022.6.28.(화) 조간 2022.6.27.(월) 11:00	배포 일시	2022. 6. 27.(월) 06:00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책임자	과 장 정규삼 (044-200-5770)
		담당자	사무관 장기봉 (044-200-5773)

항만 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계획, 이렇게 준비하세요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84(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배포 등 준비 자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배포하였고, 6월 28일(화)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항만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항만 안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는 올해 8월 4일부터 각 항만사업장 별로 사업장의 구조, 장비, 그리고 취급화물 등 특성을 고려하여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준비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4월까지 현장에서의 실증을 거쳐 보완한 후 지난 6월 17일(금) 각 항만사업장에 배포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총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6월 28일(화) 부산에서 항만사업장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은 취급하는 화물 유형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 부두용(用), 일반화물 부두용(用), 공용부두용(用), 액체부두용(用) 등 4종의 표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작업별 위험구역 표시, 작업별 감독자 배치,

작업 전과 작업 중, 그리고 작업 후 안전수칙 이행 방법, 장비·근로자 통행 구역 구분, 중장비 속도제한, 안전 상시점검 계획, 선사·하역사의 도급 및 임대계약자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더 이상 항만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와 항만산업계는 「항만안전 특별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며, “하역업계가 처음 도입되는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주요 내용

□ 공통사항

- (안전보건 방침) 책임과 권한, 준수 의무, 안전관리 목표와 방침
- (회사정보) 회사개요, 회사면적 및 정보(위험구역 및 통행구역 표시 등), 안전관리계획서 담당자, 주요장비, 근로자 정보(직영, 도급, 임대 등)
- (조직의 역할,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도급·임대계약 사업주 및 관리자, 근로자 등, 근로자 참여 및 협의 등
- (안전수칙 준수 참여 서약서) 도급·임대계약자의 안전수칙 참여 서약서, 항만사업장 출입자의 안전수칙 참여 서약서 등
- (현장안전 점검 등) 현안점검 계획, 점검표, 잠재요인 발굴 체계 등
- (비상대응 절차) 비상대응 훈련계획, 구조와 응급처치, 비상상황별 대응 절차 등

□ 항만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계획(예시)

○ 컨테이너 전용부두

- 본선작업 : 작업 전/중/후 안전수칙, 특수화물 양/적하 안전수칙, 라싱케이지 안전수칙, 본선 하역작업 외 근로자 출입 안전수칙 등
- 야드작업 : 야드구역 개요, 야드구역 안전수칙, 크레인 안전수칙 등
- 위험물 취급 : 위험물 분류, 위험물 장치장 현황 및 안전수칙 등
- 그 외 : 게이트 작업, 외부차량, CFS, 정비작업, 임대구역, 컨수리장·세척장 등의 안전수칙

○ 일반화물 부두

- 작업영역별 안전수칙 : 작업 전 안전수칙, 작업 중(선내작업, 에이프런, 야적장) 안전수칙, 작업 후 안전수칙
- 화물별(줄걸이별) 안전수칙, 본선 하역작업 외 근로자 안전수칙 등
- 위험물 취급 : 위험물 분류, 위험물 장치장 현황 및 안전수칙 등
- 그 외 : 게이트 작업, 외부차량, CFS, 정비작업, 임대구역, 컨수리장·세척장 등의 안전수칙

참고 2

항만 사진

